

1. 개정이유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강화 및 선박온실가스 배출 관리 등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2020.3.24. 공포)에 따라 선박에너지관리효율계획서 및 연간 연료유 사용량 보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독하지 않은 폐기물(분뇨) 등의 배출 시 기관일지에 기록(안 제13조의2제5항)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 중 마쇄하지 않거나 소독하지 않은 분뇨를 승인된 방법에 따라 바다에 배출할 경우 배출장소 등을 기관일지에 기재하도록 함.

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대한 검사(안 제30조의4)

총톤수 5천톤 이상 국제항해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 후 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연간 선박 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의무(안 제30조의5)

총톤수 5천톤 이상 국제항해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따라 매년 연간 연료유 사용량, 항해거리 및 항해시간 등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를 검증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선박연료유 사용량 검증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라. 부적합 연료유 사용의 예외적 인정절차 등(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
항 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을 수 없는 선박에 대하여 부적합 연료유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배기가스정화장치 고장 시 조치한 사항 등을 기관일지에 기재하도록 함.

마.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의 단축(안 제35조제3항)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등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기존 1년에서 3개월 내지 6개월로 줄임.

바. 수입선박의 디젤기관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안 별표 21의2 제2호자목)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중 국내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수입선박은 최소한 기준 1을,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입선박은 기준 2를 만족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4. 7. ~ 5. 18.)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

- 규제 완화(1건), 신설(1건), 강화(1건)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한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경도와 위도), 배출량, 당시 선박의 속력(노트)과 흘수(미터)를 기관일지에 기재하고, 그 당직 책임자와 기관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유자(선박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자”로 한다.

제30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41조의3제3항 및 제41조의3제5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기준과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은 별표 20의4와 같다.
- ③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검사신청서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검사하는 경우, 별표 20의4에서 정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기준에 따라 해당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별 사용한 연료유 종류
2. 기관별 연료유 사용량(리터)
3. 선박의 항해거리(마일)
4. 선박의 항해시간 및 정박시간
5. 운송 화물량(톤) 및 운송거리(마일)

② 법 제4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에서 사용한 연료유의 사용량 및 선박의 운항거리 등(이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이라 한다)을 보고하고 이를 검증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선박연료유 등 사용량 보고 및 검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사본
2.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사본
3. 선박연료유 사용량 검증확인서 사본(최초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기간(이하 “보고 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연료유공급서 사본

5. 보고 기간에 해당하는 선박 운항시간과 거리 및 사용한 연료유 종류와 사용량이 기재된 서류 사본

6. 보고 기간의 시작일자, 종료일자 및 보고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일자의 기관일지와 연료유 사용량을 보정한 경우, 그 일자의 기관일지 사본

③ 법 제41조의4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을 말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라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에 대한 검증을 받고자 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통해 검증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별지 제7호의6서식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검증확인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그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에 대한 검증결과를 국제해사기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업체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제거하는 업체 또는 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의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단)체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오존층파괴물질 회수설비의 보유현황과 각 회수설비의 제원 및 작
동지침서

2. 오존층파괴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회수용기의 보유현황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업체 또는 단체가 제5항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8서식의 오존층파괴물
질 설비 처리업(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단)체 지정서의 유효기
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단)체로 지정된 사업자
가 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방해양수산
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1의 기준을 말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를 각각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제1호 중 “장소”를
“장소(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향해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같
은 항 제2호 중 “법 제44조제2항”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양”을 ”양(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향해하는 경우에 한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료유의 황 함유량(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일자, 시간, 장소 및 고장내역(법 제44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5. 제4호의 고장을 고치거나 대체하기 위해 조치한 사항(법 제44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6. 제3항에 따라 부적합 연료유를 수급받은 일자, 장소, 수급량 및 그 황 함유량(제3항에 따라 부적합 연료유를 수급받은 경우에 한한다)

③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황 함유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유(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황 함유량 기준을 말하며, 이하 “부적합 연료유”라 한다)의 사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7호의9서식의 부적합 연료유 사용 보고서를 연료유를 공급받고자 하는 항만에 입항하기 3일 전까지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관리”를 “관리 및 증명절차”로 한다.

③ 법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정기항로에 종사하는 선박 : 3개월

2.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제1호 이외의 선박 : 6개월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목 및 차목”을 “자목부터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나 목 중 “자목”을 “자목부터 카목까지”로 한다.

가. 별표 3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 안내표시판과 폐기물관리계획서(해당되는 선박에 한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자목 및 차목”을 “자목부터 카목까지”로 한다.

제50조의2 및 제6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제30조의5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 검증확인서, 제39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추록, 제43조제3항에 따른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제44조제4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제46조제4항제1호 및 2호에 따른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및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증서,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약검사증서,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제58조제3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이하 “전자증서”라 한다)로 발급 할 수 있다.

제61조의2(검사신청 서식) 선박소유자가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검사, 선박연료유사용량 검증, 유증기배출 제어장치검사, 휘발성유기화합물관기계획서 검인, 정기검사, 중간검사, 중간검사연기,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방오시스템검사, 임시방오 시스템검사, 예비검사, 에너지효율검사,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유효기간연장, 성능시험, 검정을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제18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의2제3항, 제30조의4제3항, 제30조의5제2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제3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및 제5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제49조제3항, 제56조제1항,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하여 검사를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제공하는 신청서식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비고 GESAMP 위험성 평가절차에 대한 범례에서 A란 등급 중 “ ≥ 5 ”를 “ $\geq 5 - <ca7$ ”로 하고, C란 포유류에 극독성 구분 중 “LD50”을 각각 “LD50/ATE”로 하며, D란 D1 중 “(≤ 3 시간)”을 “(≤ 3 분)”으로 하고, D3를 다음과 같이 한다.

C: 발암성
M: 돌연변이 유발성
R: 독성재발성
Ss: 피부에 민감
Sr: 호흡기관에

민감
A: 흡입위험
T: 대상기관 계통 손상
N: 신경독성
I: 면역독성

별표 3 제1호나목2)다)를 라)로 하고, 같은 2)에 다) 및 마)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4) 및 5)를 각각 5) 및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하역방법을 통하여 회수될 수 없는 화물잔류물에 대하여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12해리. 이러한 화물잔류물은 국제협약 부속서 5 부록 1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국제해사기구가 개발한 지침을 고려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것으로 분류된 어떠한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마) 동물 사체의 경우, 국제해사기구가 개발한 지침서를 고려하여, 배출은 가능한 한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곡물을 제외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6장 1-1.2규칙에 정의된 고체산적화물은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5의 부록 1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고 해양환경에 유해한지 여부에 대해 화주가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20 제1호다목3) 중 “(PMD)”를 “(PMD).”로 하고, 같은 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지르코늄이산화물감지기(ZRDO)는 이중연료 또는 가스연료엔진에는 사용되어져서는 아니 된다.

별표 20 제1호다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탄화수소(HC)분석기: 탄화수소(HC) 분석기 : 가스온도가 $190^{\circ}\text{C} \pm 10^{\circ}\text{C}$ 를 유지하도록 가열된 감지기, 밸브 및 관련 구성품을 갖춘 가열 불꽃이온감지(HFID)형식이어야 한다. 선택적으로, 점화용액체연료를 분사하지 않는 가스연료엔진에 사용되는 탄화수소분석기는 비가열식 불꽃이온감지(FID)형식

이어야 한다.

별표 20의4의 제목 중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을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기재사항, 작성방법 및 검사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파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검사기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의 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기준은 국제해사기구가 개발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의 개발에 관한 지침」(국제협약 부속서 6의 제22규칙 및 제22A규칙)에 따라야 한다.

별표 21의2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의 마목의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기준 2와 3을 모두 만족하거나 기준 2만을 만족하는 디젤기관을 설치한 선박이 상기 다목에 따른 질소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진출·입하는 경우 또는 그 규제해역 내에서 운전상태(on/off status)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디젤기관의 기준상태와 운전상태, 선박의 위치와 일시를 기관일지에 기록할 것.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다음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수입되는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기준 1을 만족하여야 하되, 이들 선박 중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기준 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수입되는 선박의 디젤기관은 기준 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별표 23의 제목 중 “연료유 건본의 관리”를 “연료유 건본의 관리 및 증명절차”로 하고, 같은 표 제6호다목 중 “선박으로서”를 “선박이거나 법 제45조제4항제2호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관련 법령

에서 정한 기간 동안”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연료유 견본 등의 황 함유량 증명절차

선박에 공급되는 연료유, 사용 중인 연료유 또는 비치된 연료유 견본의 황 함유량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는 국제협약 부속서 6의 부록 6에 의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 부터 별지 제7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자목”을 “자목부터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 뒤쪽 제2호 다목 중 “검정합격증명서”를 “검정합격증명서,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및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의”로, “한정합니다)”를 “한정합니다) 각”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기록”을 “기록,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매뉴얼 및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록부, 폐기물 처리 안내표시판 및 폐기물관리계획서”로, “한정합니다)”를 “한정합니다) 각”으로 같은 호 라목 중 “기록”을 “기록,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매뉴얼 및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록부, 폐기물처리 안내표시판 및 폐기물관리계획서”로, “한정합니다)”를 “한정합니다) 각”으로 한다.

차.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매뉴얼 및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록부 각 1부

카. 폐기물 처리 안내표시판과 폐기물관리계획서 각 1부

별지 제22호서식의 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규칙 2.2.5에 따라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가 본선에 제공되어야 함. :
That the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quired by paragraph 2.2.5 of the Code has been supplied to the ship in an approved form.
7. 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적하되어야 함:
That the ship must be loaded:
1. 규칙 2.2.6에 따라 설치된 복원성 적하지침기기를 사용하여 손상/비손상복원성요건에 적합함이 검증된 조건으로만 적하²⁾
only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compliant with intact and damage stability requirements using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f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2.6 of the Code²⁾ ;
2. 규칙 2.2.7에 의해 면제되거나, 규칙 2.2.6에 의해 요구되는 승인된 복원성 적하지침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에 승인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하되어야 함.²⁾
where a waiver permitted by paragraph 2.2.7 of the Code is granted and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required by paragraph 2.2.6 of the Code is not fitted, loading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pproved methods²⁾:
- (1) 상기 6항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서 제공된 적하 조건에 적합²⁾ ; 또는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conditions provid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²⁾; or
- (2) 승인된 방법에 의해 원격으로 검증된 조건으로 적하²⁾; 또는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remotely using an approved means²⁾; or
- (3) 상기 6항에 참조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승인된 적하범위 내에서의 적하²⁾; 또는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which lies within an approved range of conditions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²⁾; or
- (4) 상기 6항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KG/GM값에 적합한 손상/비손상 복원성 요건에 따라 적하²⁾; 그리고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verified using approved critical KG/GM data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²⁾; and
3. 이 증서에 기재된 적하 제한 조건에 따라야 함.²⁾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limitations appended to this Certificate.²⁾

별지 제24호 서식의 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규칙 2.2.1.1에 따라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지침서가 본선에 제공되어야 함.;
That the loading and stability manuals required by paragraph 2.2.1.1 of the Code have been supplied to the ship in an approved form.
7. 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적하되어야 함:
That the ship must be loaded:
- 1.* 규칙 2.2.1.2에 따라 설치된 복원성 적하지침기기를 사용하여 손상/비손상복원성요건에 적합함이 검증된 조건으로만 적하
only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compliant with intact and damage stability requirements using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f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2.1.2 of the Code ;
- 2.* 규칙 2.2.1.3에 의해 면제되거나, 규칙 2.2.1.2에 의해 요구되는 승인된 복원성 적하지침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에 승인된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하되어야 함.
where a waiver permitted by paragraph 2.2.1.3 of the Code is granted and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required by paragraph 2.2.1.2 of the Code is not fitted, loading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pproved methods:
- (1) 상기 6항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지침서에서 제공된 적하 조건에 적합 ; 또는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conditions provid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manual referred to in 6 above; or

- (2) 승인된 방법에 의해 원격으로 검증된 조건으로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remotely using an approved means; or
- (3) 상기 6항에 참조된 적하 및 복원성 지침서에 승인된 적하범위 내에서의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which lies within an approved range of conditions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manual referred to in 6 above; or
- (4) 상기 6항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지침서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KG/GM값에 적합한 손상/비손상 복원성 요건에 따라 적하; 그리고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verified using approved critical KG/GM data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manual referred to in 6 above; and

별지 제28호 서식의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분뇨처리장치의 제원:**

Description of the sewage treatment plant:**

분뇨처리장치의 형식

Type of the sewage treatment plant; _____

제조사 명칭

Name of manufacturer; _____

이 분뇨처리장치는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의서 MEPC.2(VI)/159(55)**에 따른 유출액 기준에 적합함이 주관청에 의하여 증명됨

The sewage treatment plant is certified by the Administration to meet the effluent standards as provided for in resolution MEPC.2(VI)/159(55)**.

이 분뇨처리장치는 4.2항의 기준을 포함/제외된*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의서 224(64)** 따른 유출액기준에 적합함이 주관청에 의하여 증명됨

The sewage treatment plant is certified by the Administration to meet the effluent standards as provided for in the Guidelines on implementation of effluent standards and performance test for sewage treatment plants, adopted by resolution MEPC.227(64)** , as amended, including/excluding* the standard of section 4.2 thereof.

별지 제29호의 서식 중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 추록의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황산화물(SOx)과 미립자 (제14규칙)

Sulphur oxides(SOx) and particulate matter (regulation 14)

2.3.1 선박이 제14.3규칙에 규정된 배출규제해역 밖에서 운항할 때에는 다음을 사용한다:

When the ship operates outside of an Emission Control Area specified in regulation 14.3, the ship uses:

.1 연료유공급서에 따라 문서화되어 있는 바와 같이 황 함유량 제한치 0.5 %m/m를 초과하지 않는 연료유 및/또는:

fuel oil with a sulphur content as documented by bunker delivery notes that does not exceed the limit value of 0.50% m/m, and/or.....□

.2 제2.6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4.1규칙에 따라 승인된 동등한 설비를 사용하며,이 설비는 0.50 %m/m 황 함유량 제한치의 연료유의 사용과 최소한 동등한 SOx 배출 저감 효과를 가짐 :

an equivalent arrangement approv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4.1 as listed in paragraph 2.6 that is at least as effective in terms of SOx emission reductions as compared to using a fuel oil with a sulphur content limit value of 0.50% m/m

□

2.3.2 선박이 제14.3규칙에 규정된 배출규제해역 안에서 운항할 때에는 다음을 사용한다:

When the ship operates inside an Emission Control Area specified in regulation 14.3, the ship uses:

.1 연료유공급서에 따라 서류화되어 있는 바와 같이 황 함유량 제한치 0.10 %m/m를 초과하지 않는 연료유 및 / 또는 :

fuel oil with a sulphur content as documented by bunker delivery notes that does not exceed the limit value of 0.10% m/m, and/or

□

.2 제2.6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4.1규칙에 따라 승인된 동등한 설비를 사용하며,이 설비는 0.10 %m/m 황 함유량 제한치의 연료유의 사용과 최소한 동등한 SOx 배출 저감 효과를 가짐 :

an equivalent arrangement approv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4.1 as listed in paragraph 2.6 that is at least as effective in terms of SOx emission reductions as compared to using a fuel oil with a sulphur content limit value of 0.10% m/m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에너지효율 적합확인서 등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 6에 따라 발급된 선박에너지효율 적합확인서 및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는 제30조의4제5항 및 제30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발급받은 선박에너지효율 적합확인서 및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

증확인서로 본다.

제3조(부적합연료유 사용보고서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 6에 따라 제출한 부적합연료유 사용보고서는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로 본다.

제4조(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제거업체의 지정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업체 또는 단체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 처리 안내표시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먼저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5 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또는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선박 기본 정보	선명(Ship Name)		선박종류(ship type)	
	IMO No.		선박호출부호(Call Sign)	
	선적항(Port of Registry)		총톤수(Gross Tonnage)	
변경 내용	(변경 신청 시에만 작성)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3의 제2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조4의 제3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검사(변경)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Office)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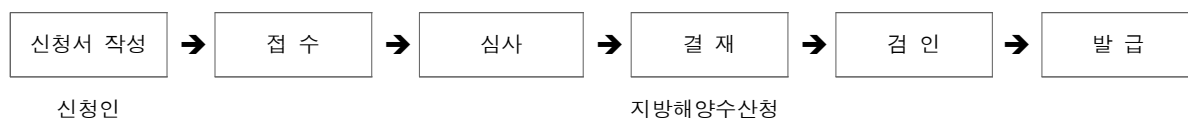
(Chief Director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선급 회장 [인]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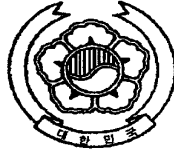
첨부서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1부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Part II) 적합확인서
CONFIRMATION OF COMPLIANCE - SEEMP PART II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1973/1978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개정하기 위한 1997년 의정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으로 한국선급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otocol of 1997, as amended,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by Shi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related thereto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선박의 명세
Particulars of Ship

선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IMO 번호 IMO Number	선적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part II 개정일(해당되는 경우) _____
SEEMP part II date of revision, as applicable _____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THIS IS TO CONFIRM:

결의서 MEPC.282(70)에 의해 채택된 2016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개발 지침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 관리계획서가 협약 제22.2 규칙의 요건에 적합하게 작성되었음.

Taking into account the 2016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SEEMP) adopted by resolution MEPC.287(70), the ship's SEEMP has been developed and complies with regulation 22.2 of Annex VI of the Convention.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증서의 발행 장소 및 일자)
Issued at _____ (place of issue of Confirmation)
Date (dd/mm/yyyy) _____ (date of issue)

지방해양수산청장 ㉮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Office)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
(Chief Director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선급 회장 ㉮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및 검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는다.

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25일
-----------	----------

선박 소유자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또는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선박	선 명	국문	선박번호
		영문	IMO번호
	선적항		총톤수
	선박용도		재화중량톤수

비고	
----	--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따라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 (MARPOL 73/78)」 부속서 6장 제22A 규칙에 따라 선박연료유 사용량을 보고하고 검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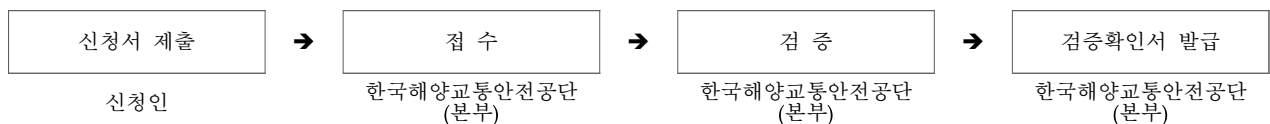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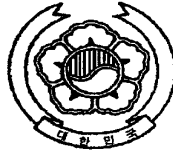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귀하
이사장

첨부서류	1. 선박국적증서 사본 2.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사본 3. 선박연료유사용량등 검증확인서 사본(최초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보고 기간에 해당하는 연료유공급서 사본 5. 보고 기간에 해당하는 선박 운항시간과 거리 및 사용한 연료유 종류와 사용량이 기재된 서류 사본 6. 보고 기간의 시작일자, 종료일자 및 보고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일자의 기관일지와 연료유 사용량을 보정한 경우, 그 일자의 기관일지사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검증확인서

STATEMENT OF COMPLIANCE - FUEL OIL CONSUMPTION REPORTING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 확인서는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따라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otocol of 1997, as amended,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by Shi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related thereto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박의 명세
Particulars of ship

선 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IMO 번호 IMO Number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 톤 수 Gross Tonnage

이 확인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협약 부속서 VI의 제22A규칙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정보 중 ____년 ____월 ____일 부터 ____년 ____월 ____일 까지의 운항기간에 해당하는 정보를 주관청에 제출함.

That the ship has submitted to this Administration the data required by regulation 22A of Annex VI of the Convention, covering ship operations from ____/____/____ through ____/____/____; and

2. 이 정보는 ____년 ____월 ____일 부터 ____년 ____월 ____일 까지의 기간에 유효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명시된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 수집되고 보고됨.

The data was collected and reported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ology and processes set out in the ship's SEEMP that was in effect over the period from ____/____/____ through ____/____/____.

이 확인서는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Statement of Compliance is valid until ____/____/____.

____년 ____월 ____일 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 _____

Date ____/____/____

해양수산부장관 (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인)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단)체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해양환경관리법」 제42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단)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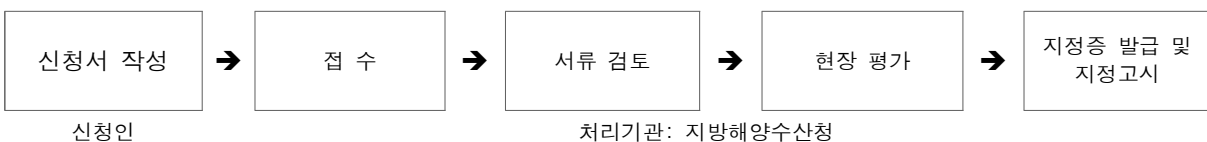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오존층파괴물질 회수설비의 보유현황과 각 회수설비의 제원 및 작동지침서 2. 오존층파괴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회수용기의 보유현황
------	---

처 리 질 차



210 mm × 297 mm(백상지 80 g/m²)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단)체 지정서

발 급 번 호 : 제 - 호

증 서 번 호 : 제 - 호

사 업 자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의 주소		
비 고		

「해양환경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이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직인

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 **(FUEL OIL NON-AVAILABLE REPORT)**

Note:

1. 이 보고서는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6, 제18.2.4 규칙에 따라 기국과 도착지의 항만당국에 송부되어야 한다. 선박/운항자는 적합연료유를 수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급적 선박이 항만/터미널을 출항 전에 이 보고서가 송부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 사본은 최소 36개월 동안 검사의 목적으로 본선에 보관되어야 한다.

1. This report is to be sent to the flag Administration and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the relevant port(s) of destina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8.2.4 of MARPOL Annex VI. The report shall be sent as soon as it is determined that the ship/operator will be unable to procure compliant fuel oil and preferably before the ship leaves the port/terminal where compliant fuel cannot be obtained. A copy of the FONAR should be kept on board for inspection for at least 36 months.

2.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6, 제14.1 또는 제14.4 규칙에 명시된 적합 연료유 수급이 불가하다면 이 보고서는 증거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2. This report should be used to provide evidence if a ship is unable to obtain fuel oil compliant with the provisions stipulated in regulations 14.1 or 14.4 of MARPOL Annex VI

3. 이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선박/운항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Before filing a FONAR, the following should be observed by the ship/operator

3.1 이 보고서는 규정의 면제가 아님.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6 18.2 규칙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항 항만 당국의 책임이다.

3.1 A fuel oil non-availability report is not an exemption. According to regulation 18.2 of MARPOL Annex VI,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Party of the destination port, through its competent authority, to scrutinize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take action, as appropriate.

3.2 보고서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경우, 기국은 부적합연료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서와 입증을 요구 할 수 있다. 또한 선박/운항자는 정박 중에 광범위한 검사 또는 시험을 받을 수 있다.

3.2 In the case of insufficiently supported and/or repeated claims of non-availability, the Party may require additional documentation and substantiation of fuel oil non-availability claims. The ship/operator may also be subject to more extensive inspections or examinations while in port.

3.3 선박/운항자는 연료유 수급 계획 시, 적합 연료 수급을 위한 항만 내 선석 또는 묘박지의 변경을 포함한 물류조건 또는 항만 정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3.3 Ships/operators are expected to take into account logistical conditions and/or terminal/port policies when planning bunkering,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having to change berth or anchor within a port or terminal in order to obtain compliant fuel.

3.4 선박/운항자는 가능한 적합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규제 요건을 초과하지 않는 다른 점도 및 황 함유량을 가진 연료유와 함께 가열 및/또는 기타 선내 처리 등의 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

3.4 Ships/operators are expected to prepare as far as reasonably practicable to be able to operate on compliant fuel oils. This could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fuel oils with different viscosity and different sulphur content not exceeding regulatory requirements (requiring different lube oils) as well as requiring heating and/or other treatment on board.

1. 선박 상세 / Particulars of ship

1.1 선명 / Name of ship: _____

1.2 IMO 번호 / IMO number: _____

1.3 기국 / Flag: _____

1.4 선박식별번호 / Ship registration Number: _____

2. 선박 항해 계획의 상세 / Description of ship's voyage plan

2.1 기항국 해역 (해당되는 경우 배출규제해역) 진입 당시의 선박의 항해 계획 상세
(가능한 계획서 사본 첨부)

2.1 Provide a description of the ship's voyage plan in place at the time of entry into "country X" waters (and ECA, if applicable) (Attach copy of plan if available)

2.2 운항 상세 / Detail of voyage

1 마지막 출발 항 / Last port of departure

2 기항국의 첫 번째 도착 항 / First port of arrival in "country X"

3 마지막 항만 출항 일자 (일-월-년) / Date of departure from last port (dd-mm-yyyy)

4 기항국의 도착 일자 (일-월-년) / Date of arrival at first "country X" (dd-mm-yyyy)

5 기항국 해역을(해당되는 경우 배출규제해역) 통항 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은 일자 (일-월-년)
/ Date ship first received notice that it would be transiting in "country X" waters
(and ECA, if applicable) (dd-mm-yyyy)

6 통지 시점의 선박 위치 / Ship's location at the time of notice

7 기항국 해역의 (해당되는 경우 배출규제해역) 진입 예상일 (일-월-년) / Date ship operator expects to enter "country X" waters (and ECA, if applicable) (dd-mm-yyyy)

8 기항국 해역의 (해당되는 경우 배출규제해역) 진입 예상시간 (시:분 협정세계시) / Time ship operator expects to enter "country X" waters (and ECA, if applicable) (hh:mm UTC):

9 기항국 해역의 (해당되는 경우 배출규제해역)진출 예상일 (일-월-년) / Date ship operator expects to exit "country X" waters (and ECA, if applicable) (dd-mm-yyyy)

10 기항국 해역의(해당되는 경우 배출규제해역 진출 예상시간 (시:분 협정세계시) / Time ship operator expects to exit "country X" waters (and ECA, if applicable) (hh:mm UTC)

11 기항국 해역 (해당되는 경우 배출규제해역) 내에서 예상 주기관 운전일 / Projected days ship's main propulsion engines will be in operation within "country X" waters (and ECA, if applicable)

12 기항국 해역 진입 및 운항 시 (해당되는 경우 배출규제해역) 사용하는 연료유 황 함유량 / Sulphur content of fuel oil in use when entering and operating in "country X" waters (and ECA, if applicable)

3. 적합 연료유 구매를 시도한 증거 / Evidence of attempts to purchase compliant fuel

3.1 적합 연료유의 대체원을 찾기 위해 수행한 모든 사항 및 적합 연료유 이용 불가사유 등을 포함한 기항국 해역 (해당되는 경우 배출규제해역) 진입 전 연료유의 사용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취하였던 조치 사항 설명 / Provide a description of actions taken to attempt to achieve compliance prior to entering "country X" waters (and ECA, if applicable), including a description of all attempts that were made to locate alternative sources of compliant fuel oil, and a description of the reason why compliant fuel oil was not available

3.2 계약한 연료유공급자의 업체명, 전자메일 주소, 주소, 전화번호 및 계약일자(일-월-년) / Contracted Supplier, E-mail address and address, phone number and date of contact (dd-mm-yyyy)

공급자와 연락한 이력(공급자와 연락한 전자메일) 사본을 첨부 / Please attach copies of communication with suppliers (e.g. emails to and from suppliers)

4. 연료유이 공급 중단되는 경우만 / In case of fuel oil supply disruption only

4.1 적합 연료유를 수급 받기로 한 항만 이름 / Name of port at which ship was scheduled to receive compliant fuel oil

4.2 연료유 공급자의 업체명, 전자메일주소 및 연락처(현재는 사용불가 보고) / Name, email address, and phone number of the fuel oil supplier that was scheduled to deliver(and now reporting the non-availability)

5. 운항 제한, 해당되는 경우 / Operation constraints, if applicable

5.1 적합 연료유의 품질로 인해 선박의 운항 또는 안전 문제가 발생 될 우려가 있어 부적합 연료유를 bunker한 경우에는 관련 우려사항에 대하여 완전하게 문서화 되어야 한다 / If non-compliant fuel has been bunkered due to concerns that the quality of the compliant fuel available would cause operational or safety problems on board the ships, the concerns should be thoroughly documented

5.2 적합 연료유 사용을 제한하는 운항적 제약 사항의 설명 / Describe any operational constraints that prevented use of compliant fuel oil available at port

5.3 적합 연료유 사용을 가능하게 하도록 운항적 제약 사항을 제거하기 위해 수행한 조치들의 구체적 명시 / Specify steps taken, or to be taken, to resolve these operational constraints that will enable compliant fuel use

6. 적합 연료유 수급 계획 / Plans to obtain compliant fuel oil

6.1 기항국의 첫 기항항만에서의 적합 연료유 사용 가능성에 대한 설명 및 수급 계획 / Describe availability of compliant fuel oil at the first port-of-call in "country X", and plans to obtain it

6.2 기항국의 첫 항만에서 적합 연료유의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차기 항만에서 수급 가능한 연료유의 최저 황함유량을 열거 / If compliant fuel oil is not available at the first port-of-call in "country X", list the lowest sulphur content of available fuel oil(s) or the lowest sulphur content of available fuel oil at the next port-of-call

7. 이전 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 / Previous Fuel Oil Non-Availability Reports

7.1 선주/운항자가 12개월 내에 기항국에 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이전에 제출한 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를 열거하고 부적합 연료유 사용하는 동안 기항한 항만 및 기항 일자 정보를 기입 / If shipowner/operator has submitted a Fuel Oil Non-Availability Report

to "country X" in the previous 12 months, list the number of Fuel Oil Non-Availability Reports previously submitted and provide details on the dates and ports visited while using non-compliant fuel oil, as set out below

보고서 / Report: _____

일자(일-월-년) / Date (dd-mm-yyy): _____

항만 / Port: _____

연료유 형태 / Type of Fuel: _____

비고 / Comments: _____

8. 선장 및 회사 정보 / Master/Company Information

선장 성명 / Master name: _____

기항지 대리점 / Local agent in "country X" : _____

선박운영자 / Ship operator name: _____

선주사 / Shipowner Name: _____

공식 이름 및 지위 / Name and position of official: _____

전자메일 주소 / Email address: _____

주소(시, 국가, 우편번호) / Address(street, city, country, postal/zip code): _____

전화번호 / Telephone number : _____

선장의 서명 / Signature of Master: _____

일자(일-월-년) / Date (DD/MM/YYYY): _____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폐기물의 배출물 승인)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13조의2(폐기물의 배출물 승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u> <u>폐기물을 배출한 선박의 소유자</u> <u>(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선</u> <u>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u> <u>는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경도</u> <u>와 위도), 배출량, 당시 선박의</u> <u>속력(노트)과 흘수(미터)를 기</u> <u>관일지에 기재하고, 그 당직 책</u> <u>임자와 기관장이 서명하여야 한</u> <u>다.</u>
제14조(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 선박·종류 및 설치기준)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선박의 <u>소유자(선박을 임대</u> <u>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u> <u>한다. 이하 같다)</u> 는 법 제25조제 1항에 따라 그 선박 안에서 발 생하는 분뇨를 저장·처리하기 위한 설비(이하 “분뇨오염방지 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선박안전법 시행규 칙」 제4조제11호 및 「어선	제14조(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 선박·종류 및 설치기준) ① -- ----- ----- <u>소유자</u> ----- ----- ----- ----- ----- ----- ----- ----- ----- ----- -----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위생설비 중 대변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와 대변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수상레저기구(이하 “수상레저기구”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제30조의4(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이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세부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은 별표 20의4와 같다.

1.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립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선박에너지효율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4(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1조의3제3항 및 제41조의3제5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기준과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은 별표 20의4와 같다.

4.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개
선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③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
지 제7호의3서식의 선박에너지
효율관리계획서 검사신청서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1
조의3제3항에 따라 선박에너지
효율관리계획서를 검사하는 경
우, 별표 20의4에서 정한 선박
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기준에 따라 해당 선박에너지효
율관리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
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선
박에 대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
의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의5(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별 사용한 연료유 종류
2. 기관별 연료유 사용량(리터)
3. 선박의 항해거리(마일)
4. 선박의 항해시간 및 정박시간
5. 운송 화물량(톤) 및 운송거리(마일)

② 법 제4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에서 사용한 연료유의 사용량 및 선박의 운항거리 등(이하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이라 한다)을 보고하고 이를 검증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선박연료유등 사용량 보고 및 검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사본
2.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사본
3. 선박연료유 사용량 검증확인서 사본(최초의 경우는 제외

한다.)

4.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기간(이하 “보고 기간”이라 한
다)에 해당하는 연료유공급서
사본

5. 보고 기간에 해당하는 선박
운항시간과 거리 및 사용한
연료유 종류와 사용량이 기재
된 서류 사본

6. 보고 기간의 시작일자, 종료
일자 및 보고 기간의 1/2에 해
당하는 일자의 기관일지와 연
료유 사용량을 보정한 경우,
그 일자의 기관일지 사본

③ 법 제41조의4제2항에서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개월을 말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1
조의4제3항에 따라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에 대한 검증을 받고자
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통해 검증하고 이
상이 없을 경우, 별지 제7호의6
서식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
증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업체의 지정기준)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1의 기준을 말한다.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검증확인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그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에 대한 검증결과를 국제해사기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업체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제거하는 업체 또는 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7 서식의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단)체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오존층파괴물질 회수설비의 보유현황과 각 회수설비의 제원 및 작동지침서
2. 오존층파괴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회수용기의 보유현황

제34조(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 장치 등) ①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0 제3호에 따른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 장치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업체 또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8서식의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단)체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단)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1의 기준을 말한다.

제34조(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 장치 등)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

-----.

②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황산
 화물 배출제한기준량”이란 배
 기가스 중 이산화황(ppm) 배출
 량 대비 이산화탄소(부피백분
 율) 배출량의 비율이 4.3[4.3 SO
 2(ppm)/CO2(% , v/v)]인 것을
 말한다.

<신 설>

③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료유의 종류 및 연료유의

②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

-----.”

③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황 함유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연료유(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황 함유
량 기준을 말하며, 이하 “부적합
연료유”라 한다)의 사용을 인정
받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7호의9서식의 부적합 연
료유 사용 보고서를 연료유를
공급받고자 하는 항만에 입항하
기 3일 전까지 해당 선박의 선
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1. -----

교환이 완료된 일자, 시간 및
장소

2. 연료유탱크에 남아 있는 연
료유(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의 양

3. 연료유의 황함유량

<신 설>

<신 설>

<신 설>

-- 장소(황산화물 배출규제해
역을 항해하는 경우에 한한
다)

2. -----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 양(황산화물 배출
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연료유의 황 함유량(황산화
물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일자, 시간, 장
소 및 고장내역(법 제44조제3
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5. 제4호의 고장을 고치거나 대
체하기 위해 조치한 사항(법
제44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6. 제3항에 따라 부적합 연료유
를 수급받은 일자, 장소, 수급
량 및 그 황 함유량(제3항에
따라 부적합 연료유를 수급받
은 경우에 한한다)

제35조(연료유의 공급) ①·②
(생략)

<신설>

③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연료
유공급서의 양식은 별표 22와
같고, 연료유 건본의 관리에 관
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④ (생략)

제39조(정기검사) ① 법 제49조제
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
선체 및 화물창(이하 “해양오염
방지설비등”이라 한다)의 정기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
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연료유의 공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
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
로서 정기항로에 종사하는 선
박 : 3개월

2.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
로서 제1호 이외의 선박 : 6개
월

④ -----

----- 관리 및
증명절차-----.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9조(정기검사) ① -----

-----.

1.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 산적운반선 외의 선박은 가목부터 다목까지, <u>자목 및 차목</u>의 서류에 한정한다) 가. ~ 차. (생략) <u><신설></u> 2. 제1호 외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가. (생략) 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u>자목</u>의 서류(해양오염 방지설비등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 ⑤ (생략) 제40조(중간검사)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 ----- ----- <u>자목부터 카목</u>----- 가. ~ 차. (현행과 같음) <u>카. 별표 3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 안내표시판과 폐기물관리계획서 (해당되는 선박에 한한다)</u>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u>자목부터 카목까지</u>---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중간검사) ① ----- ----- ----- ----- ----- -----.
---	--

1. (생략)

2.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자목 및 차목의 서류(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 ⑥ (생략)

<신설>

1. (현행과 같음)

2. -----
----- 자목부터 카목까지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선박에너지 효율적합확인서, 제30조의5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 검증확인서, 제39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추록, 제43조제3항에 따른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제44조제4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제46조제4항제1호 및 2호에 따른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및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증서,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약검사증서,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제58조제3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는 해양수

<신 설>

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이하 “전자증서”라 한다)로 발급할 수 있다.

제61조의2(검사신청 서식) 선박소유자가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 이송계획서 검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검사, 선박연료유 사용량 검증, 유증기배출제어장치검사, 휘발성유기화합물관기 계획서 검인, 정기검사, 중간검사, 중간검사연기,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방오시스템검사, 임시방오시스템검사, 예비검사, 에너지효율검사,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등의유효기간연장, 성능시험, 검정을 공단 또는 선급 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제18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의2제3항, 제30조의4제3항, 제30조의5제2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제3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및 제5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

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
제2항, 제49조제3항, 제56조제1
항,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하여 검사를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제공하는 신청서식
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